

사천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안

의안 번호	10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3. 3.12

제 출 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사천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(국도3호선에서 사천읍 용당리 용당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(도로)로 결정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○ 사천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결 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대로	1	5	35	간선 도로	420	대로 1-1	사천읍 용당리 47-1	일반 도로			

3. 법적근거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

6. 의견청취 안건 : 별첨

사천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
1. 사천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

가. 도로결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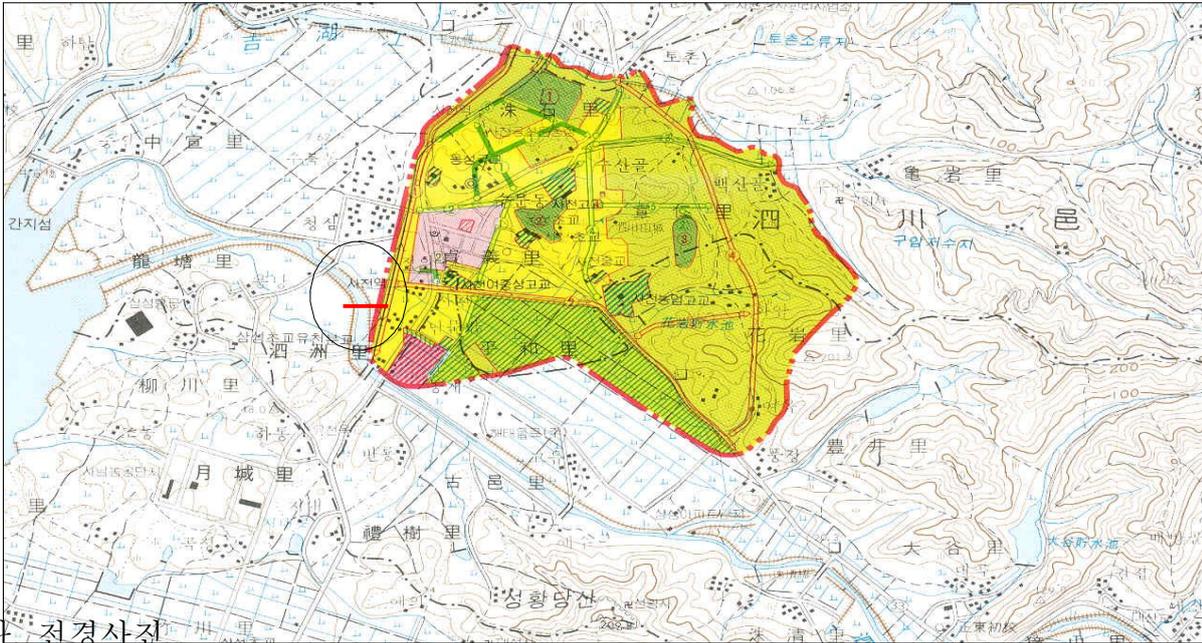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대로	1	5	35	간선 도로	420	대로 1-1	사천읍 용당리 47-1	일반도로			

나 도로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-	대로1-5	신설 연장 : 420m 폭원 : 35m	도시지역 확장에 대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진사공단내 해안도로 계획을 수용하기 위함

2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도

가. 도시계획시설 위치도(S = 1 : 50,000)



나. 전경사진

